

6·25전쟁 납북자 명부들의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김명호

강릉원주대학교

<국문 요약>

정부와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의 노력으로 납북자와 관련된 12종의 명부가 발견되었으며, 납북자 관련 연구들도 활발해졌다. 그러나 이 명부들은 작성시기와 목적, 조사항목 등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작성기관도 민간단체와 정부, 적십자사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부에 대한 1차 자료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발견된 명부의 연관성, 작성배경과 명부의 구체적인 조사항목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논자는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의 도움으로 관련 자료들을 모두 입수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발견된 12종의 명부들을 대상으로, 각 명부의 작성 배경과 내용 등을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 명부들에 대한 종합분석과 발견된 모든 명부들을 통합한 단일 명부 작성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납북자들이 강제로 북한으로 끌려간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증명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납북자 문제는 북한의 무대응으로 인하여 별다른

* 익명의 심사위원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진척을 보이지는 않지만, 이 문제는 개인의 인권문제인 동시에 인도주의적인 문제이다. 정부는 납북자 문제를 인도주의적인 접근방법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6·25전쟁 납북자, 납북자 관련 명부

I. 서론

1. 문제의 제기

6·25전쟁은 우리들에게 참혹한 상처와 아픔을 남겼다. 특히, 납북인사 유가족들의 슬픔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유가족들은 연좌제로 인한 이중적인 고통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납북자와 그 유가족들은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납북자들이 북한에서 생존해 있을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다행히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하 가족회)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2010년 3월 2일, 제287회 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이하 납북자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이로서 납북피해 발생 60년 만에 납북자 및 유가족들의 명예회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한편, 납북자 특별법의 제정에 의해 행정적으로는 많은 진전을 보고 있지만, 유가족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납북자의 생존여부에 대한 파악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납북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며, 북한의 협조 없이는 납북자의 생존여부 등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이에 납북자 관련 명부를 찾아서 정리·분석하여, 북한에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또 정책적인 제언을 하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이것이 일반 연구자의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납북자 명부가 발견되기 전, 주무부서인 통일부에 의하면 “납북자의 통계는 있고, 명단이 없는 상태”였지만(김성동 2002, 338), 2002년 2월 가족회가 1952년에 정부가 발행한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처음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당시의 통일부 차관은 “발견된 문건의 작성 주체가 정부라면, 공신력 있는 문건으로 보아야하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그런 신빙

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북한에 납북자 송환을 요구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김성동 2002, 341)고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앞으로 납북자 문제에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이 인정할 수 있는 자료보완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 연구 목적

그동안 납북자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있었으나, 납북자 명부와 관련된 분석적인 연구는 최초로 발견된 정부 발행의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의 DB화에 의해 그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것이 있다(김명호 2004, 159-176). 그리고 추가로 발견된 납북자 명부 4종의 분석(김명호 2006, 113-138)과 명부 5종의 분석에 대한 연구(김명호 2008, 1-24)가 있다.

현재, 정부와 가족회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12종의 명부가 발견되었으며, 각 명부들은 작성기관에 따라 작성시기와 목적, 조사항목 등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작성기관도 민간단체, 정부, 한국적십자사, 북한적십자사, 미국 CIA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북자 명부에 대한 1차 자료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발견된 명부의 연관성, 작성배경과 명부의 구체적인 조사항목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지만, 논자는 가족회의 도움으로 관련 자료들을 모두 입수할 수 있었다. 이에 각 명부의 특성과 작성 배경, 내용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명부들에 대한 종합분석과 앞으로 발견된 모든 명부들을 통합한 단일명부 작성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납북자 문제 해결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납북자 관련 선행연구

1. 납북자의 정의와 납북자 명부

국어사전(naver 어학사전)에 의하면, 납북(拉北)이란 ‘북한으로 납치해 감’으로 정의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납북자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던 사람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강제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사람(윤여상 2002, 285)을 말한다. ‘월북’의 사전적(naver 어학사전) 의미는 ‘①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경계를 지나 북쪽으로 넘어감, ② 삼팔선 또는 휴전선의 북쪽으로 넘어감’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6·25전쟁 납북자란 전쟁 시기에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북한으로 강제 납치되어간 민간인(윤여상 2004, 217)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한편, 발견된 명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향사민’이란 용어는 납북자를 단순한 실향민으로 파악한 것으로, 납북자 문제 해결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신율 2001, 14-31). 그러므로 납북자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북한으로 납치되어, 지금까지 억류된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는 전시납북자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서 6·25전쟁 중(1950.6.25~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6·25전시 납북자 문제는 65년의 긴 세월 동안 ‘납북자는 없다’는 북한의 태도와 표명으로 납북자의 존재를 부정해 왔다. 그러나 12종의 납북자 명부가 발견된 시점에서 북한의 납북자 존재 부정은 거짓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2. 선행연구

6·25전쟁에 내재된 복잡성으로 인해 국내외 학자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수행하는 과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납북자와 관련된 연구는 북한의 불법적인 납치행위에 대한 비판, 정부의 대북정책의 미흡, 그리고 대응방안의 제시 등이 그 주류를 이루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납북자와 관련된 1차 자료가 부족하였으며, 방대한 DB작업, 명부의 조사항목에 대한 제한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정부가 1952년에 직접 작성한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가 2002년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대부분 이 문제에 주목해 오지 않았으며, 납북자 명부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 예로서, 신윤(2001, 14-31)은 대한적십자사의 『실향사민 등록자명부』(1956)에 나타난 납북자 수인 7,034명으로 한국전쟁 당시의 납북자 규모를 분석함으로써 10만여명에 가까운 납북자 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김명호(2004, 159-176)는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의 DB화된 자료를 토대로, 81,716명의 납북자 가운데 경찰(1,206명), 기술자(2,581명), 공무원(2,004명), 군인(455명), 변호사(139명), 학생(3,396명), 교수 및 교원(677명) 등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06년(김명호 2006, 113-138)에 발견된 명부를 추가하여 모두 4종의 명부¹⁾를 다시

-
- 1) ① 서울특별시피해자명부 : 1950년 12월 1일 대한민국 공보처 통계국 작성, 최초 납치관련 명부로 서울지역의 납치·피살·행불자 명단 4,616명 중 납치는 2,438명
 - ② 6·25사변피랍치인사명부 : 1951년 6·25사변피랍치인사가족회 작성 2,316명
 - ③ 6·25사변피랍치자명부 : 1952년 대한민국정부 작성, 82,959명 (최초 전국명부)
 - ④ 실향사민 등록자명단 : 1956년 대한적십자사 피납치자 등록자 명단 7,034명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2008년 추가로 발견된 내무부 치안국의 『피납치자 명부(17,940명)』를 포함한 5종의 명부에 등재된 명단을 분석하였다(김명호 2008, 1-24). 그 결과, 전체 납북자 수는 96,013명이었으며, 납북자의 88.2%(84,659명)가 전쟁발발 직후인 1950년 7월~9월의 3개월 동안에 납북되었다. 납북자의 98.1%(93,939명)가 남성이었고, 납북자 연령은 16세부터 35세가 84.6%(81,240명)였으며, 납북자의 80.3%(77,056명)가 자택이나 자택 근처에서 납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각 명부마다 조사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관적인 분석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납북자 문제의 대응 방안 가운데 일본정부의 방안이 구체적이며, 실효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이 1991년 1월 북·일관계정상화의 선결조건으로 납북자 문제해결을 내세우자, 그동안 납북자가 없다고 주장하던 김정일은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하여 시인하고, 사과하였다(『중앙일보』, 2013/05/19). 그 결과, 1999년 12월, 일본이 납북자 10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의 조선적십자회와 일본적십자사의 합의로 일본인 납북자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며, 일본인 납북자와 그 가족들을 일본으로 데려올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김용범(2002, 20-49)은 일본의 납북자 문제에 대한 협상태도를 분석하고, 한국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생사확인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일본의 대북협상방안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혜복(2002, 89)은 납북자의 직업별 수, 주요 납북인사들의 명단을 나열하였으며, 납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북 저(低)자세를 비판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남한의 가족들 품에 되돌려 줄 수는 없더라도 생사여부 확인만이라도 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점에서 볼 때, 그동안 정부는 대북문제에서 소극적이었으며, 북한과의 대화에서 납북자 문제라는 의제가 상정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Ⅲ. 납북자 관련 명부 분석

1. 『서울특별시 피해자 명부』

1) 작성기관

‘공보처 통계국’이 단기 4283년 6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의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단기 4283년(1950년) 12월 1일 발행하였다.

2) 작성 배경

가족회가 고서수집가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6·25전쟁 발발 직후부터 9·28 서울 수복까지의 인민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자 명단을 조사한 것이다. 그러므로 서울시내 9개 구청별로 조사한 명단을 담당 공무원이 한자로 직접 기재하여 등사(謄寫)한 것으로, 모두 2,438명의 납북자 명단이 수록되어 있으며, 피살, 행방불명과 강제 납치된 인사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3) 범례

범례(範例)를 통하여 명부의 작성 사유와 작성 방법을 적고 있으며, 이 명부는 초기에는 애국적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후, 피해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였다고 한다. 범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공보처 통계국 1950, 1).

- ① 6·25사변중 수도 서울의 역치(逆治) 3개월에 무수한 애국적 저명인사가 잔인무도한 공산도당에게 학살, 납치 또는 행방불명이 되었다. 서울특별시의 애국적 인물의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편집한 것이다.
- ② 피해인물의 개별적 내용을 상세히 하기 위하여 성명, 연령, 직업, 약력, 주소와 피해상황에 있어 장소, 일시, 종류 등 항목을 정하여 조사하였다.
- ③ 조사대상을 14세 이상으로 하되, 괴뢰집단의 의용군으로 출

두한 자는 제외하였다.

- ④ 편집에 있어 당초계획인 애국적 저명인사의 선출한도가 곤란하게 되어 보도된 피해자 전부를 수록하고, 피해자명부라고 하였다.
- ⑤ 피해자의 색인(索引)의 편의를 도모하여 피해자의 주소를 주관으로 하여 각 구별로 편집하고 다시 다수 성(性)의 순서를 동회(洞會) 및 통반별(統班別)로 정리하였다.

4) 명부 내용

명부상의 순서는 총괄표에 나타난 구별(區別) 순서대로 작성하였으며, 각 구의 첫 페이지에 총수(계, 남, 녀), 피살(계, 남, 녀), 납치(계, 남, 녀), 행방불명(계, 남, 녀)의 수를 다시 표기하였다. 각 구(區)에는 대상자를 찾기 쉽게 다시 성(性)씨별로 구분하였으며, 가장 많이 나오는 성(性)씨인 金, 李, 朴, 崔 등의 순으로 기록하였다. 단, 범례에서 ‘동회(洞會) 및 통반별(統班別)로 정리하였다’는 내용은 실제 조사한 결과, 주소는 정확하게 기재되었지만, 동회 및 통반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았다.

작성 방법은 구별(區別)로 작성하였으며, 각 구내(區內)에 다시 성씨별(姓氏別)로 맨 앞쪽에 목차를 작성하였다. 한 페이지에 28명의 납북자 명단을 표로 만들어 개인별 가로방향으로 기록하였다.

조사항목은 납북자의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소속 및 직위’, ‘피해 일시’, ‘피해 종류’, ‘피해 장소’, ‘약력’, ‘주소’의 순으로 기재되었다. 또한, 피해종류의 항목인 ‘납치’, ‘피살’, ‘행방불명’으로 피해상황이 구분되어 있다.

〈표 1〉 서울특별시 피해자명부의 총괄표

	총 계	피 살		납 치		행방불명	
		남	여	남	여	남	여
총 계	4,616	796	180	2,345	93	1,149	53
중구	892	140	37	473	15	218	9
종로구	769	82	22	511	17	127	10
동대문구	255	27	7	168	10	42	1
성동구	568	94	11	270	9	181	3
성북구	534	103	25	221	15	162	8
서대문구	438	59	8	256	10	102	3
마포구	212	33	13	124		40	2
용산구	579	150	35	211	12	163	8
영등포구	369	108	22	111	5	114	9
총 계	4,616	796	180	2,345	93	1,149	53

출처 : 공보처 통계국(1950, 2)

명부에 기록된 피해자 총수는 4,616명이며, 이 가운데 ‘납치’가 가장 많은 2,438명이다. 납치를 당한 사람 가운데 여성은 93명이며, 행방불명자는 1,202명, 피살자가 976명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중구(892명), 종로구(769명), 용산구(579명) 순으로 피해자가 많았다.

명부에는 현상윤 고려대 총장, 손진태 서울문리대 학장, 소설가 이광수, 국회의원 안재홍, 조소앙 등, 당시의 유명 인사들과 함께 의사, 변호사, 경찰, 공무원, 교사, 상업, 학생,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의 납북자들이 기재되어 있다(김성동 2002, 339).

5) 부록

부록에는 ‘임시 인구 및 피해조사결과 명세(단기 4283년 10월 25일)’의 제목으로,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주택, 사업체 등의 피해도 기록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공보처 통계국

1950, 부록 1-17).

- ① 연령계급별 인구수 : 서울특별시민에 대하여 1949년 5월 1일(6·25이전)과 1950년 10월 25일을 비교하여 구청별 가구수,²⁾ 연령별,³⁾ 성별 인구수가 구분되어 작성되어 있다. 서울시의 인구는 1949년 5월 1일 기준으로 1,446,019명에서 1950년 10월 25일 기준 1,202,487명으로 243,562명이 감소하였으며, 16.8%의 감소율을 보였다. 그리고 1952년 3월 말 기준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서울시 인구는 다시 143,396명이 증가하였다(공보처 통계국 1952).
- ② 원인별 피해자수 : 성별(계, 남, 녀), 사망(총수, 폭격, 총포, 화재, 피살, 행방불명, 비율), 부상자(총수, 폭격, 총포, 화재, 기타, 비율)로 구분하여 작성되어 있다. 사망자의 수는 17,127명(1.2%), 부상자의 수는 5,114명(0.4%)로 나타났으며, 사망자의 수가 많은 지역은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 ③ 주택피해상황 : 폭격, 총포, 화재, 기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구수(19,042가구)를 화재와 파괴로 나누어 피해면적과 피해금액을 기록하였으며, 서울시 주택의 6%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 ④ 사업체피해상황 : 폭격, 총포, 화재, 기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의 수(5,187개)와 종업원수(33,823명)를 화재와 파괴로 나누어 피해면적과 피해금액이 기록되어 있다.
- ⑤ 이동사항 : 가구수(92,894가구)와 인구수(292,038명)로 나뉘어져 나타났으며, 이동원인으로 폭격(25,971명), 화재(23,257명), 전출 및 피신(221,154명), 기타(11,656명) 등으로 구분되

2) 서울시 전체 가구수는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서울시 지역의 대부분 감소한 것에 비하여 특이하게 서대문구만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17세 이하, 18세, 19세, 20세, 21~25세, 26~30세, 31~35세, 36~40세, 41~45세, 46~50세, 51세 이상으로 구분

어 나타났다.

- ⑥ 공영물(公營物) 피해상황 총괄표 : 서울시, 내무부, 외무부, 재무부 등 모든 부처를 피해면적(전체 피해 동수 : 1,203동, 피해면적 : 74,993평), 피해액(전체 피해액 545,970,279천원)으로 나타내고 있다.

2. 『6·25사변 피납치인사 명부(LIST OF PERSONS KIDNAPPED AT THE TIME OF JUNE 25TH INCIDENT)』

1) 작성기관

‘6·25사변 피납치인사가족회’가 2,527명의 명단을 작성하여, 단기 4284년(1951년) 8월 27일에 발행하였다.

2) 작성 배경

1951년 7월 10일 6·25전쟁 휴전회담이 시작되자, ‘6·25사변 피납치인사가족회’는 남한의 민간인 납북 문제가 휴전회담에서 협상의제로 채택되어 송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UN군측 대표에게 전달하고자 서둘러 명부를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9·28서울 수복 후부터 피해가족들로부터 받아온 납치피해신고서가 직업별로 재분류되어 영문병기로 작성되어 있다.

3) 범례

범례(範例)에는 명부의 작성 사유와 작성 방법이 적혀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6·25사변 피납치인사가족회 1951.8, 1).

- ① 6·25사변중 수도 서울의 역치(逆治) 3개월에 무수한 애국적 저명인사가 잔인무도한 공산당에게 납치되었다.
- ② 9월 28일 수도 서울에 환도이후, 서울특별시내 애국인사의 납치된 상황을 조사하여 편집한 것이다.(소수의 시외 인사가 포함됨)

- ③ 피해인사의 개별적 내용을 상세하기 위하여 성명, 연령, 직업(직위), 주소, 납치일 등 항목을 정하여 조사하였다.
- ④ 조사대상을 피뢰집단에 의용군으로 출두한 자는 제외하였다.
- ⑤ UN 각 기관의 열람상의 편의를 위하여 영문성명을 부가하였다.
- ⑥ 피해자의 직업(직위)별로 종목을 정하여 통계를 계산하였다.⁴⁾

4) 명부 내용

명부의 맨 앞부분에 위치한 범례와 통계표는 먼저 국문으로 작성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는 앞 쪽의 내용이 영문번역이 되어 작성된 것으로, 휴전회담의 UN군 대표, UN, 국제사회 등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목차에는 직업별로 나열되어 있고, 해당 쪽수 번호가 작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수는 영문번역이 되어 작성되었다.

납북자의 조사항목은 ‘성명(영문 이름, 한문 이름)’, ‘연령’, ‘직장’, ‘주소’, ‘납치년월일’의 순으로 작성되었다. 예를 들면, 명단 첫 페이지에 ‘정부 요인 및 관공리(政府要人及官公吏)(GOVERNMENTAL OFFICIALS 328’이라고 표지를 만들고, 그 다음 쪽수부터 328명의 납북된 정부관료들의 명단을 ‘Name(영문이름, 한문이름)’, ‘Age’, ‘Workin’, ‘Address’, ‘Kidnapped date’의 순으로 작성하였다. 여기서 ‘Workin’은 직장을 나타내고, 명단은 가나다 순이나 주소별로는 작성되지 않았다.

4) 명부상에 ‘지방인사는 조사하지 못하여 납치인사의 완전한 통계라고 인정할 수 없음’이라고 명기하고 있으며, 주로 서울과 인근 지역의 납북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 2〉 통계표

정부 요인 및 관공리	328	미국대사관	18
법 조 계	88	경찰관 및 형무관	209
교 육 계	113	동회장 및 동회직원	83
언 론 계	79	학 생	120
실 업 계	391	예 술 가	20
의사 및 의학계	40	무직인사	95
은행가 및 회사원	209	청년단 및 민보단	442
기 독 교	31	추 가	142
군인 및 군속	119		
		총 수	2,527

참고 : 나타낸 숫자는 납북자의 수를 말함.

출처 : 6·25사변 피납치인사가족회(1951. 8, 3)

‘추가’ 납북자의 수가 129명에서 142명으로 늘어나 납북자 총 수가 2,514명에서 2,527명으로 증가하였지만, 본 명부에서는 이 내용을 제대로 기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 『6·25사변 피납치인사 명부』

1) 작성기관

당시 국회의장인 신익희 선생에게 전달된 명부로, ‘6·25사변 피납치인사가족회’가 1951년 9월에 작성하였다.

2) 작성 배경

‘6·25사변 피납치인사가족회’가 작성하여 당시 국회의장인 신익희 선생에게 제출된 것으로, 이 문서는 신익희 선생의 유품에서 발견되어 가족회에 입수되었다. 명부에 수록된 피납치자는 대부분 서울지역 거주자이며, 모두 2,316명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2002, 9).

이 명부와 1951년 8월 27일에 발행된 『6·25사변 피납치인사 명부』를 비교할 때, 작성기관이 ‘6·25사변 피납치인사가족회’로 동일하며, 조사대상 지역도 서울 및 인근지역으로 같다. 그리고 작성시기도 비슷하며, 납북자의 수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동일한 명부를 단지 구별(區別)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3) 명부 내용

필사 등사본의 110페이지 분량으로, 서울시의 각 구청과 시외 지역(수원, 양주, 광주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조사항목에는 납북자의 ‘성명’, ‘직장’, ‘연령’, ‘주소’, ‘피해일자’가 작성되었다. 명단은 가로쓰기로 작성되었으며, 정해진 표양식을 만들지 않고, 한 페이지에 24~25명의 납북자 명단을 수록하였다.

1950년의 『서울특별시 피해자 명부』에 게재된 현상윤 고려대 총장, 손진태 서울문리대 학장, 국회의원 안재홍 등의 납북인사들이 기재되어 있었다.

4.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1) 작성기관

대한민국 정부가 작성한 것으로, 서울(1권), 경기·충북(2권), 충남·전라·제주(3권), 경상·강원(4권) 등 지역별로 분류한 4권과 추가분(서울특별시 및 각 도)으로 발간한 별권을 합쳐 모두 5권으로 구성되었고, 1952년 10월경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1952년도 『대한민국 통계연감』의 인명피해 납치 통계 82,959명은 추가분에 기록된 전국 납치 통계 82,959명과 일치되기 때문이다.

2) 명부의 작성배경

휴전회담에서 전쟁 중 납북된 남한 민간인 송환문제를 거론하

기 위해서는 북한에 제시할 납북자의 명부가 반드시 필요했고, 이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작성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명부가 작성 중에 있음을 주한 미국 무초 대사가 1951년 12월 19일 美 국무부에 보고한 1급 비밀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⁵⁾ 전쟁 중 각계각층의 유명인사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남한 민간인들이 북한으로 납치되어 갔기 때문에, 정부가 국가적 인명피해로 여기고, 전국 일선행정기관에 명령을 시달하였으며, 납치여부를 확인한 후 명단을 올렸다고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보처 통계국 직원 이원상씨가 증언한 바 있다.⁶⁾ 이것을 가족회가 2002년 2월 중순경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견하였다.

3) 명부의 내용

최초의 전국단위 납북자 명부로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실사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다른 명부와는 다르게 의용군과 노무자로 강제 징집된 납북자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는 유일한 명부이다. 1차는 지역별로 작성된 4권의 통계자료이며, 2차는 추가로 조사된 서울시 및 각 도의 추가분에 실린 통계자료이다. 다만 2차 추가분은 1차분과 달리 서울특별시와 각 도로 나누어 성(姓)씨별 색인에 의하여 기재되었다. 1차와 2차에 수록된 숫자를 합한 전국의 납북자 수는 82,959명이며, 이 가운데 남자가 81,369명, 여자가 1,5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5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남자가 큰 비율로 납북되었지만, 제주도의 경우만 전체 납북자 45명 가운데 여자가 30명 납북되었다(대한민국 정부 1953, 3).

-
- 5) 문서 비밀해제 기간인 50년이 지난 뒤, 가족회가 미 국방성에서 직접 찾아낸 문서임.
 6) 실제로 양평군의 경우, 「6·25사변으로 인한 사망·납치 또는 행방불명자 등 조사표」에 의하여 개인별 조사가 시행되었고, 일선행정기관에서 상급 기관으로 보고되었음을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 총괄표

지역별 성별	총 수			제1차			제2차		
	총 수	남	여	총 수	남	여	총 수	남	여
총 수	82,959	81,369	1,590	80,661	79,145	1,516	2,298	2,224	74
서울특별시	20,517	19,982	535	18,330	17,868	462	2,187	2,114	73
경기도	15,958	15,870	88	15,871	15,783	88	87	87	-
충청북도	6,168	6,155	13	6,166	6,153	13	2	2	-
충청남도	9,973	9,642	331	9,972	9,641	331	1	1	-
전라북도	7,013	6,592	421	7,013	6,592	421	-	-	-
전라남도	3,555	3,506	49	3,554	3,506	48	1	-	1
경상북도	7,486	7,396	90	7,483	7,393	90	3	3	-
경상남도	1,815	1,807	8	1,805	1,797	8	10	10	-
강원도	10,429	10,404	25	10,422	10,397	25	7	7	-
제주도	45	15	30	45	15	30	-	-	-

출처 : 대한민국 정부(1953, 3).

조사항목에는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소속 및 직위’, ‘납치년월일’, ‘납치장소’, ‘주소’ 등 8개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 1950년 12월에 작성된 『서울특별시 피해자 명부』보다 두 개 항목이 줄어 약력란과 피해종류란이 없어졌지만, 거의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2002, 9).

5. 『6·25동란으로 인한 피납치자 명부』

1) 작성기관

1954년, 내무부 치안국에서 작성하였으며, 지피자료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작성 배경

정부 내무부 치안국에서 작성하여 국가기록원에 마이크로필름

상태로 보관되어 있던 것을 가족회가 수집했지만 글자를 알아보기 어려웠다. 그 후 외교정책자료실에서 지피자료로 된 2권의 동일한 명부가 발견되어 비로소 판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명부는 국제적십자사에 납북자 안부탐지를 의뢰하기 위하여 의용군을 제외한 호주(戶主) 중심의 순수한 민간인 신분의 피납치자 명단이며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2006, 793-804), 17,940명이 수록되어 있고, 납치 주체가 기록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3) 명부 내용

명부 1쪽에 <표 4>의 총괄표를 나타내고, 명부상의 전체 납북자 수를 지역별로, 남녀별로 나타냈다(내무부 치안국 1954, 3). 특이한 점은 충청북도의 납북자 수가 7,517명이며, 서울시의 4,281명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표 4> 총괄표

지역별 \ 성별	총 수	남	여
총 수	17,940	17,573	367
서울특별시	4,281	4,121	160
경 기 도	3,361	3,198	163
강 원 도	949	946	3
충청북도	7,517	7,491	26
충청남도	382	380	2
전라북도	45	44	1
전라남도	453	449	4
경상북도	896	888	8
경상남도	56	56	0

출처 : 내무부 치안국(1954 : 1).

이 명부의 앞에는 납북자의 남녀별로 직업별 통계표(7)와 연령

별 통계표를 분석하여 작성하였다. 납북자의 명단은 각 시도별 순서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 상기 표의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명단의 첫 쪽에는 ‘총수 4,281명’, ‘남 4,121명’, ‘여 160명’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 페이지부터 구청별로, 그리고 성씨별로 김(金)씨를 가장 먼저 나타냈다. 그러나 이것은 가나다순이 아니었다.

한 쪽당 18명의 납북자 명단을 표로 작성하여 세로방향으로 기록하였으며, 조사항목으로 ‘성명’, ‘성별’, ‘연령’, ‘직업’, ‘납치년월일’, ‘납치장소’, ‘납치상황’, ‘당시주거지’를 기록하였다. 납치장소에는 ‘자택’, ‘노상’, ‘사무실’ 등을 분명하게 나타냈으며, 처음으로 기재된 납치상황에는 ‘인민군에게 납치’, ‘정치보위부원에게 납치’, ‘내무서원에게 납치’ 등 당시 납치한 주체를 분명하게 기록하였다. 특이한 사실은 납북자에 대한 조사항목에서 단 하나의 공란도 없다는 것이다.

6. 『남한출신 실항사민 명부

(LIST OF DISPLACED KOREAN CIVILIANS)』

1) 작성기관

1954년, ‘6·25사변 피납치인사가족회’에서 납북자 가운데 남한출신만 뽑아 다시 작성하였으며, 그동안 치안국 정보과에 보관하고 있었다.

2) 작성 배경

납북자의 성명 앞에 영문 성명이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은, UN 및 국외의 다른 기관에 명단을 발송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명부 1쪽에 ‘NOTE’라는 제목 밑에 영문으

7) 국회의원, 농업, 상업, 공업, 수산업, 교통업, 공무자유업, 학생, 경찰관, 기타 유업, 무직으로 분류

로 명부 작성의 배경이 기록되고, 다음 쪽에 한글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다. 이것은 다른 명부의 범례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본 명부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편집한 것으로, 명부에 기재된 납북자는 1950년 6월부터 9월까지 북한공산정치보위부 및 내무서원에게 체포당한 사람들이며,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 후 임시로 결성된 ‘6·25사변 피납치인사가족회’에서 편집한 것이 명부의 서문에 명시되어 있다(6·25사변 피납치인사가족회 1954, 2).

3) 명부 내용

‘목차’에는 각 성별로 ‘ㄱ부’, ‘ㄴ부’, ‘ㄷ부’ 등 가나다순으로 나타냈으며, ‘ㄱ부’는 ‘KAN(簡)’, ‘KAM(甘)’, ‘KANG(姜)’, ‘KANG(康)’, ‘KYOUNG(慶)’ 등의 순으로 나타냈다. 그리고 성별로 명단이 시작되는 쪽수 번호를 바로 옆 칸에 기록하여 찾아보기 쉽도록 하였다. 명단이 작성된 쪽수는 956쪽이며, 모두 17,900명의 납북자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성(姓)씨의 가나다순으로, 조사항목인 ‘NAME(영문 이름)’, ‘성명(한글 이름)’, ‘성별’, ‘연령’, ‘주소’가 기록되었으며, 1쪽에 20명의 명단이 세로방향으로 작성되어 있다. 그러나 납북자의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다.

7. 『실향사민신고서』

1) 작성기관

납북자의 유가족들이 1956년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2개월간 납북 사실에 관한 내용을 직접 작성하여 대한적십자사에 제출한 7,034명의 신고서로, 대한적십자사가 낱장으로 보관해온 원본을 2002년 27권의 분량으로 제본하였다. 그 가운데 22권과 27권에 해당하는 원본이 분실되어 현재 총 6,472건이 보존되어 있다.

2) 작성 배경

일정한 양식이 없이 납북자 유가족들이 납북자의 인적사항을 신고서 형식으로 1~2쪽의 분량을 서술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이것은 1956년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우편으로 납북자 유가족들이 대한적십자사에 발송한 것을 대한적십자사가 취합한 것이며, 모두 7,034명의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제본의 편의상 300명씩 묶어 책자로 만들었으며, 당시 유가족들이 사용한 편지봉투도 함께 첨부되어 있다.

3) 명부 내용

이 명부는 일정한 서식이 없이 유가족들이 편지지에 작성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납북자의 신고사항으로 ‘성명’, ‘성별’, ‘생년월일’, ‘본적’, ‘최종현주소’, ‘최종직업’, ‘가족대표’, ‘납치장소 및 납치상황’ 등이 반드시 작성되었고, 그 이외에도 납북당시의 납북자 개인에 관한 내용이 소상하게 기록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신고서 상단에 접수번호(No.)를 순서대로 기재해 두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는 보내온 납북자 신고서의 상단에 결제란 도장을 찍어, ‘접수’, ‘교열(敎閱)’, ‘기록’, ‘재열(再閱)’, ‘번역’, ‘타자’, ‘사무총장’, ‘총재’ 등 8명의 결제를 받아 두어야 했지만, 대부분 ① 접수, ② 교열(敎閱)이나 기록, ③ 타자 등 3군데만 결제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

8. 『1956년 실향사민 등록자 명단』

1) 작성기관

『실향사민신고서』를 대한적십자사가 정리하여 1956년에 발행한 명부이다.

2) 작성 배경

이 명부는 대한적십자사가 “납북자들의 안부를 탐지해주겠다”며, 납북자 유가족들로부터 1956년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2개월에 걸쳐 전국적으로 접수를 받은 『실향사민신고서』를 정리하여 표로 작성해 둔 것이다. 때문에 『실향사민신고서』와 일련번호가 동일하며, 7,034명의 납북자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대한적십자사a 1956, 3).

명부의 제목에 ‘납북자’라는 용어가 아닌 ‘실향사민(Displaced Civilians)’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북한에 안부탐지를 하기 위한 공여지책”(신윤, 2001: 14-31) 이었다는 평가가 있는 한편, 대한적십자사(1976, 163)가 1976년 9월에 펴낸 『이산가족 백서』에 의하면, “유엔군측이 실향사민이라고 규정한 것은 중대한 과오였다”(김성동 2002, 343)는 비판도 있다.

‘납북자’와 ‘실향사민’의 용어선택의 차이는 납북자에 대해 북한이 아직도 수궁하지 않는 명분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3) 명부 작성방법

‘색인’에는 ‘ㄱ부’, ‘ㄴ부’, ‘ㄷ부’로 구분하였다. ‘ㄱ부’를 살펴보면, 납북자의 수가 가장 많은 김(金), 강(姜)의 성명을 먼저 기재하였으며, 그 다음은 계(桂), 강(康), 경(慶) 등 일정한 순서가 없이 많이 나타나는 성씨 순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련번호는 『실향사민신고서』의 접수번호대로 기재되어 있다.

4) 명부 내용

‘색인’ 다음에 ‘납치인사 등록자 통계(접수기간 1956년 6월 15일~8월 15일)’가 삽입되어, 납북자에 대한 등록자 현황을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다(대한적십자사 1956a, 3-5).

(1) 성별

남자(6,884명), 여자(150명), 총 7,034명으로 나타났다.

(2) 연령별

18세부터 89세까지 각 연령별로 해당되는 납북자의 수를 나타냈다. 30세가 303명으로 가장 많으며, 31세(296명), 32세(275명), 28세와 29세(270명), 27세(26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80대의 고령도 10명이 납북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5〉 납치인사 등록자의 연령별 통계

연령	인원												
18	1	19	2	20	5	21	5	22	16	23	45	24	97
25	161	26	201	27	263	28	270	29	270	30	303	31	296
32	275	33	267	34	248	35	262	36	240	37	230	38	190
39	208	40	244	41	189	42	215	43	182	44	177	45	164
46	138	47	141	48	129	49	155	50	124	51	131	52	92
53	114	54	101	55	82	56	96	57	70	58	86	59	72
60	82	61	59	62	48	63	45	64	31	65	26	66	19
67	33	68	19	69	24	70	20	71	18	72	8	73	6
74	7	75	5	76	4	77	2	78	3	79	8	80	4
82	1	86	1	88	1	89	3						

출처 : 대한적십자사(1956a, 3)

모두 7,034명이 납북되었으며, 위의 표를 10년 주기별로 다시 정리한 결과를 살펴보면, 30대가 2,519명(35.6%)으로 가장 많이 납북되었으며, 그 다음 40대(24.7%), 20대(19.0%)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20대에서 40대 사이가 납북자의 79.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3) 출생지 및 납치지역

출생지별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남도의 순으로 많고, 납치된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상북도, 충청북도의 순으로 많다. 북한 출신들도 1,036명이 있는데, 서울특별시에서 출생한 2,199명보다 납치인원이 4,981명으로 2배 이상 납치된 것은, 납북자들이 다른 시도에서 대부분 서울시로 옮겨와 생활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6〉 납북자의 본적지 및 납치지역

도 별	출생인원 (명)	납치인원 (명)	도 별	출생인원 (명)	납치인원 (명)
함경북도	87		충청북도	253	122
함경남도	226		충청남도	312	91
평안북도	295		전라북도	133	28
평안남도	216		전라남도	180	18
황 해 도	212		경상북도	455	175
강 원 도	545	377	경상남도	203	25
서울특별시	2,199	4,981	제 주 도	23	-
경 기 도	1,695	1,217			

출처 : 대한적십자사(1956a, 4)

(4) 직업별

직업별로는 납북자 가운데 공무원이 1,35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농업(1,005명), 상업(966명), 회사원(737명), 학생(677명), 교육자(355명)의 순으로 많았다. 농업의 인원이 많은 것은 당시 농업 종사자가 대부분인 사회구조적인 이유라고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이들은 전쟁 후 북한지역의 피해복구 작업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정치인, 공무원, 판검사, 변호사, 언론인, 의료인, 회사원 등 지식층이 많은 것은 북한의 “남조선에서 인테리 모셔오기 작전”(김일성 1946, 66-69)의 실행결과로 볼 수 있다.

〈표 7〉 직업별

종 별	인 원	종 별	인 원	종 별	인 원
정치인	85	의료원	199	노 동	177
공무원	1,359	예술인	36	학 생	677
판검사	34	저술가	15	무 직	248 *
변호사	72	어 업	6		
언론인	75	임 업	6		
기 업	208	철공업	162		
상 업	966	토건업	66		
농 업	1,005	은행원	94		
광 업	24	회사원	737		
종교인	82	통 역	16		
교육자	355	기술자	330		

* 청년단원 21명 포함

출처 : 대한적십자사(1956a, 5)

5) 개인별 기록사항

개인별 신고사항으로 ‘일련번호,8)’, ‘성명’, ‘성별’, ‘연령’, ‘본적’, ‘납치지’, ‘직업’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였으며, 작성방법은 가로로 한 쪽 분량에 16명을 기록하였고, 전체 문서의 분량은 542쪽이다.

9. 『우리측 안부탐지조회서(7,034명)』

1) 작성기관

1956년 10월, 대한적십자사가 『실향사민신고서』를 요약하고, 영문병기로 작성한 것이다.

8) 『실향사민신고서』의 일련번호와 동일함.

2) 작성 배경

대한적십자사가 1956년 10월 국제적십자사에 납북자의 안부탐지를 요청하기 위하여 『우리측 안부탐지조회서(7,034명)』를 보냈다. 그리고 국제적십자사는 이 조회서를 북한의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에 송부하였다(김성동 2002, 343)고 한다.

3) 명부 내용

조회서 양식은 한 쪽 분량에 납북자 1명분의 기재항목으로 되어 있고, 영문과 국문으로 표기한 것을 복사하여 사용하였다. 각 항목을 국문으로 작성하고, 다시 영문으로 타이핑하는 방법을 취한 형태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상단의 일련번호는 『실향사민신고서』, 『실향사민 등록자 명부』 모두 동일한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이것은 두 명부를 대조해 볼 수 있게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사항목은 납북자 개인별로 ‘No’, ‘성명’, ‘성별’,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최종현주소’, ‘최종직업’, ‘가족대표’, ‘관계’, ‘실향당한 장소 및 실향 상황’을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하였다. 그리고 명단의 아래 부분에 납북자의 ‘납치일’, ‘납치상황’, 서대문형무소 등 ‘수감장소’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대한적십자사b, 1956).

10. 『실향사민 소식조사 회답서』

1) 작성기관

1957년, 북한의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가 작성하여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한 명부로, 『우리측 안부탐지조회서(7,034명)』에 대한 답신이다.

2) 작성 배경

1957년 11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19차 국제적십자회의에서 북한의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가 생사확인을 요청한 『우리측 안부탐지조회서(7,034명)』에 대하여 337명의 생존자 명단을 보내왔다. 당시 언론은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김성동 2002, 343).

3) 명부 내용

한 쪽 분량에 2명의 납북자에 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으며, 납북자 개인별로 ‘소식 조사 회답’이라는 제목 밑에 ‘No’, ‘성명’, ‘생년월일’, ‘성별’, ‘최종직업’, ‘본적지’, ‘최종 거주지’, ‘의뢰자 성명’, ‘그와의 관계’, ‘소식 조사 결과’ 등의 각 항목이 국문으로 기재되어 있다(조선적십자회 1957).

〈표 8〉 소재 확인자 납북 당시 직업별 통계

직업별	인원수	직업별	인원수
국회의원	9	간호원	4
공무원	33	약제사	2
대학교수	6	식당종업원	1
교원	17	인쇄공	3
회사원	29	전공	1
의사	9	병원조수	1
직공	8	건축업	2
농업	67	공업	4
목공	7	점원	1
상업	35	운전	5
무직	32	화가	1
기자	3	이발	1
학생	47	은행원	1
철공	6	정미업	1
계			337

출처 :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1957, 1)

남북 당시의 남북자 직업은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국회의원, 공무원, 대학교수, 교원, 회사원 등 사회지도층들이 많았다. 그리고 합계가 337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336명으로 확인되었다.

남북자들의 북한에서의 생활수준을 보면, 남북자 가운데 상위층에 13명(3.85%), 중간층에 112명(33.2%), 하위층에 113명(33.5%)이다.

〈표 9〉 소재확인 당시 직업과 생활수준

직업별	인원수	생활수준
평화통일촉진회	8	상위층 13
교수	5	
사무원	55	중간층 112
학생	23	
교원	13	
병원 또는 진료소	13	
은행원	3	
기자	3	
가극단	2	
농업	41	하위층 113
직공	63	
탄광	6	
운전	3	
미기재	99	99
계	337	377

출처 :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1957, 2)

남북자들이 북한에서의 거주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북한 전역에 걸쳐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평양시에 89명(26.4%)이 거주하며, 각 도의 리단위에도 180명(53.4%)이 거주하고 있다.

〈표 10〉 소재 확인자 분포

지역 별		인원 수	계	지방 별
평 북	시단위	4	29	북부지방 88
	리단위	25		
함 북	시단위	7	16	
	리단위	9		
함 남	시단위	11	26	
	리단위	15		
자 강	리단위	14	14	
양 강	시단위	1	3	
	리단위	2		
평양시		89	89	
평 남	시단위	6	55	
	리단위	49		
황 북	시단위	14	46	
	리단위	32		
황 남	시단위	7	33	남부지방 59
	리단위	26		
개성시		11	11	
강 원	시단위	7	15	
	리단위	8		
계	시단위	157	337	
	리단위	180		

출처 :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1957, 3)

‘소식 조사 회답’이라는 제목 하에 납북자 개인별로 ‘No, 성명, 생년월일, 성별, 최종직업, 본적지, 최종 거주지, 의뢰자 성명, 그와의 관계, 소식 조사 결과’가 국문과 영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국문만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소식 조사 결과’에 해당 납북자의 북한에서의 거주지 및 현재의 활동사항이 기록되고 있다. 한편, 납북자의 잘못 기재된 생년월일이 『우리측 안부탐지조회서

(7,034명)』에서 올바르게 생년월일을 기록한 것이 상당수 발견되었다.

11. 『실향사민 명부』

1) 작성기관

1963년 1월 1일, 국방부(‘국제연합군 총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대한민국 군대표단’)가 작성한 것으로, 가장 최근에 작성된 명부로 알려져 있다. 이 명부는 불행하게도 11,675명이 기록된 1권만 발견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아직 2권은 발견되지 않았다.

2) 명부 작성 방법

조사항목으로 ‘연번호’,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연번호와 연령, 명부 하단의 쪽 번호는 손으로 직접 작성하였고, 나머지는 사항은 활자인쇄이다. 한 쪽 분량에 세로로 남북자 25명의 명단을 수록하였으며, 다른 명단과 달리 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국방부 1963).

3) 명부 내용

조사항목인 ‘연번호’, ‘성명’, ‘연령’, ‘성별’, ‘주소’를 지역에 관계없이 성씨별로 기록되어 있으며, 1권에는 金씨가 가장 먼저 나왔고, 姜, 權, 高, 郭, 具 등의 남북자수의 순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권의 뒷부분에는 李씨의 명단이 시작되는 부분까지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아마도 2권에 李씨의 명단이 이어지고 나머지 성씨의 남북자 명단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각 성씨 안에서는 가나다순을 따르려고 한 흔적이 보이지만, 완전하지는 않다. 발견된 1권은 467쪽으로 11,675명의 남북자가 기재되어 있다.

12. 『INFORMATION REPORT』, Persons arrested in Seoul by the North Koreans

1) 작성기관

미국 NARA에서 발견한 CIA 납북자 명부로, 서울지역 납북자에 한정되어 있다. 이것은 미국 CIA 정보원이 습득하여 1951년 1월 19일에 본부에 전달한 명부로, 작성기관은 북한측으로 추정되며, 작성시기는 1950년 10월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2) 작성 배경

1950년 10월 15일 미국 CIA 정보원이 습득한 명단을 영어로 번역하여, 1951년 1월 19일 본부에 보고한 명부이다. 그리고 북한군에 체포되어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서울거주자 명단이 기록된 최초의 납북자 명단으로 추정된다. 이 명부를 습득한 장소는 지워져 있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러 정황상 북한측이 작성한 명단일 가능성이 높다.

명부에 등재된 명단이 납북자 명단과 거의 동일하고, 주소는 한국정부가 작성한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보다 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유가족들을 통해 확인되었다. 그리고 납북자의 영문 이름 옆에 수기로 한문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CIA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며, 문서에 기록된 명부의 습득일자는 시기적으로 한국정부가 작성한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3) 명부 작성 방법 및 내용

명부의 조사항목으로 ‘name’, ‘address’, ‘occupation’, ‘date of arrest’가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명부는 총 26쪽이고, 각 쪽에 26명씩 661명의 납북자 명단이 영문타자로 작성되어 있으며, 영문 이름 오른쪽에 수기로 한문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납치일을 모르는 경우에는, ‘?’로 나타냈다. 이것은 다른 명부에 비하여 주소가 때

우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다. 납북자들의 명단은 영문 알파벳순으로 정렬되어 있으나, 납북자들의 나이, 성별, 납치일자 기재되어 있지 않다.

IV. 기존 명부들의 종합분석과 단일명부 작성의 방향

1. 기존 명부들의 종합분석

기존에 발견된 12종의 6·25전시 납북자 명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발행시기에 따라 순서대로 나타내었다. 6·25전쟁이 일어난 해인 1950년 10월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INFORMATION REPORT』를 시작으로 1963년 『실향사민명부』에 이르기까지 국내에서 11종, 국외에서 1종의 납북자 명부가 발행되었다. 이러한 명부의 작성은 당시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홍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아일보(1950/11/09; 1)에 의하면, 대한적십자사는 미국적십자사의 협력을 얻어 1950년 11월부터 6·25전쟁 이후 행방불명(포로, 납치, 체포, 피살, 기타)된 애국자 및 일반 국민의 조사사업을 착수하니, 각 지사 및 일반 관민의 적극 협조를 바라는 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1952년 1월, 6·25전쟁 이래 납치당한 인사들의 가족들로 구성된 6·25사변피납치인사가족회에서 피납치자의 성명, 본적, 주소, 연령, 직업 등을 국회사무소(당시에는 부산 동광동 소재)와 가족회에서 추가적으로 접수한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명부 작성의 목적은 휴전회담 대표단에 납치 인사들의 석방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였다(동아일보 1952/01/05; 2).

〈표 11〉 발행시기별 납북자 명부 내역

번호	명부(권)	작성기관	대상지역	발행일	납북자 수(명)	비고
1	INFORMATION REPORT	미국 CIA	서울	'50.10 이전추정	661	참고용
2	서울특별시 피해자 명단(1권)	공보처 통계국	서울	'50.12.1	2,438	피살, 행방 불명 나타냄
3	6·25사변 피납치인사명부 (1권)	6·25사변 피납치인사 가족회	서울인근	'51.8.27	2,527	UN군에 전달용으로 작성
4	6·25사변 피납치인사명부 (1권)	6·25사변 피납치인사 가족회	서울인근	'51.9.1	2,316	신익희선생 에게 전달
5	6·25사변 피납치명부(4권)	대한민국 정부	전국	'52	82,959	전국단위 최초의 명부
6	6·25동란으로 인한 피납치자명부 (2권)	내무부 치안국	남한 출신	'54	17,940	마이크로 필름 상태
7	남한출신실향사 민명부(1권)	6·25사변 피납치인사 가족회	남한 출신	'54	17,900	치안국에서 보관함
8	실향사민신고서 (27권)	납북자유가족	전국	'56	7,304	납북신고서 형식
9	1956년 실향사민 등록자 명단	대한적십자사	전국	'56	7,304	7번의 정리
10	우리측 안부탐지 조회서	대한적십자사	전국	'56	7,304	8번에 영문 추가
11	실향사민소식 조사회답서(1권)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전국	'57	337	8번에 대한 답신
12	실향사민명부 (1권)	국방부	전국	'63	11,700	2권 미상

그리고 발견된 12종의 납북자 명부들을 연도별, 작성기관별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1>과 같이 1950년부터 1963년까지 지속적으로 납북자 명부가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가적인 주요 이슈였음을 알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1953년 8월 14일 유가족들의 납북자 구출대회가 있었고(조선일보 1953/08/14; 2), 1964년 조선일보가 ‘납북인사 송환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한지 51일 만에 서명자 수가 101만 1,980명에 달하였으며, 이 명부는 유엔 본부에 전달되었다. 이 서명기간동안 북한은 노동신문에 ‘자진 월북’이라는 억지 사실을 실었다고 한다(조선일보 1964/08/25; 1). 이와 같이 유가족들이 중심이 되어 납북자 송환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였으나, 안보문제나 통일논리로 인해 6·25전쟁 납북자들의 존재는 북한당국에 의해 철저히 부정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남한 당국으로부터도 외면당해왔다(김명호 2015, 81).

	1950	1951	1952	1953	1954	1956	1957	1963
정부	서울특별시 피해자 명부 (공보처)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정부)		6·25동란으로 인한 피납치자 명부 (내무부)			실향사민 명부 (국방부)
가족회		6·25사변 피납치인사 명부 (UN에 전달) 6·25사변 피납치인사 명부 (신익희선생에 전달)			남한출신 실향사민 명부			
대한 적십자사						실향사민신고서(유가족 작성) 1956년 실향사민 등록자 명단 우리측 안부탐지조회서		
북한 적십자사							실향사민 소식조사 회답서	
미국 CIA	INFORMATION REPORT							

〈그림 1〉 연도별, 작성기관별 납북자 명부

위의 그림에서 정부가 발행한 명부가 4종이었다는 사실이 확인 되었으며, 가족회가 3종, 대한적십자사가 3종, 북한적십자사 1종, 미국 CIA 1종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는 ‘납북자의 명단이 없다’(김성동 2002, 338)고 주장을 했는지 의심스럽다.

납북자 명부를 통하여 우리는 납북자와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얻고자 한다. 그런데 기준에 발견된 납북자 명부들은 작성기관이 다른 관계로, 1963년에 발행된 『실향사민명부』는 조사항목이 성

명, 성별, 연령, 주소의 4개이며, 가장 많은 조사항목은 1956년에 작성된 『우리측 안부탐지 조희서』의 11개 였다. 납북자 명부에 따른 조사항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납북자 명부의 조사항목별 비교

번호	명부(권)	발행일	납북자 수(명)	조사항목	비고
1	INFORMATION REPORT	'51.10	661	성명(영문, 한문), 주소, 직업, 체포일	참고용
2	서울특별시 피해자 명단(1권)	'50.12.1	2,438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소속 및 직위, 피해 일시, 피해 종류, ⁹⁾ 피해 장소, 약력, 주소	
3	6·25사변 피납치 인사명부(1권)	'51.8.27	2,527	성명(영문, 한문), 연령, 직장, 주소, 납치년월일	
4	6·25사변 피납치 인사명부(1권)	'51.9.1	2,316	성명, 직장, 연령, 주소, 피해일자	
5	6·25사변 피납치 명부(4권)	'52	82,959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소속 및 직위, 납치년월일, 납치장소, 주소	
6	6·25동란으로 인한 피납치자명부(2권)	'54	17,940	성명, 성별, 연령, 직업, 납치년월일, 납치장소, 납치상황, 당시주거지	
7	남한출신실향사민 명부(1권)	'54	17,900	성명(영문, 한문), 성별, 연령, 주소	
8	실향사민신고서 (27권)	'56	7,304	성명, 성별, 생년월일, 본적, 최종현주소, 최종직업, 가족 대표, 납치장소 및 납치 상황, 개인에 관한 내용	
9	1956년 실향사민 등록자 명단	'56	7,304	성명, 성별, 연령, 본적, 납치지, 직업	
10	우리측 안부탐지 조희서	'56	7,304	성명, 성별,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최종현주소, 최종직업, 가족대표, 관계, 실향당한 장소 및 실향 상황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
11	실향사민소식조사 회답서(1권)	'57	337	성명, 생년월일, 성별, 최종직업, 본적지, 최종 거주지, 의뢰자 성명, 관와의 관계, 소식 조사 결과	국문으로 기재
12	실향사민명부(1권)	'63	11,700	성명, 연령, 성별, 주소	

2. 단일명부 작성의 의의와 방향

1) 단일명부 작성의 의의

2010년 11월 18일, 제287회 국회 본회 제12차 회의에서 ‘납북자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12월 14일, ‘납북자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진상조사는 물론 납북자 여부 심사·결정을 하게 되었다(해럴드경제, 2010/12/14). 그 일환으로 2011년 1월 3일부터 2015년 12월 12일까지 전국 228개 시·군·구에서 6·25전쟁 중 납북 피해신고를 접수받았다.

그리고 최근 국무조정실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진상조사 보고서는 2016년 연말까지 내부 집필을 마무리하고, 2017년부터 의견 수렴 및 검증을 거쳐 완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국무조정실 통일안보정책과 보도자료, 2016/4/21). 진상조사 보고서는 모두 자료집 7종을 발간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단일명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6·25전쟁 휴전으로 종식된 지 63년이 되었지만, 미국 CIA가 작성한 명부를 제외한 11종의 납북자 명부를 통합하여 새로운 단일명부로 작성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11종의 명부에 등재된 납북자 명단을 모두 통합하고, 중복으로 등재된 납북자를 찾아내어 단일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작성기관이 다르고, 조사항목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동일 납북자에 대한 신고 지역의 변동과 가족 간의 이중 신고 등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가족회 홈페이지에서 납북인사인 ‘안재홍’을 검색하면, 모두 6명의 명단을 발견할 수 있다. 이름으로 볼 때 이들은 동일인이지만, 나이, 직업, 주소, 납치일 등이 명부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6명을 동일인으로 취급할 수 있

9) 납치, 피살, 행방불명으로 구분

느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지만 이 6명은 동일인으로 판단된다.

납북인사 DB

강릉대학교 김명호 교수께서 자원봉사로 납북자 명부를 디지털 자료로 만들어 주셔서 아래와 같이 직접 납북자의 인적사항을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전체명단	50년 서울 피해자 명부	52년 피납치자 명부	54년 피납치자 명부	56년 실항사민 명단	51년 가족회
검색조건	<input type="text"/>	검색	상세검색	총 게시물 수 : 6 현재 페이지 : 1/1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납치일	출처
안재홍 (安在淸)	60	국회의원	평택군	1950년7월	52년 명부
안재홍 (安在淸)	61	국회의원	돈암동산11의152		52년 명부
안재홍 (安在淸)	63	국회의원	성북구 돈암동 11-153	1950-09-20	54년 명부
안재홍 (安在淸)	59		돈암동 산 11-152	1950.00.00	51년 가족회
안재홍 (安在淸)	60	국회의원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산11의152	1950.09.25	50년 명부
안재홍 (安在淸)	66	국회의원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산 11의 152	6.25전쟁중	56년 명부

〈그림 2〉 납북인사 DB 검색결과

출처 :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http://www.kwafu.org> (검색일: 2015.5.10)

실제로 납북자 단일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명부마다 ‘동일인’이면서 직업을 달리 신고한 경우’와 같은 이름이면서 주소란에 ‘번지 주소만 기록한 경우’와 ‘통반 주소만 기록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으며, 나타난 문제점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유가족들이 명부마다 신고시에 직업을 달리 기재한 경우
- 유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직업을 무직으로 기재한 경우
- 한 명부에는 ‘번지 주소’만 기재하고, 다른 명부에는 ‘통반 주소’만 기재한 경우
- 주소에 본적지나 임시 거주지(기숙사, 관사, 하숙집 등)로 기재한 경우

- 주소에 오타가 있는 경우
- 나이를 특정 명부에 신고 당시 나이로 환산하여 기재한 경우

김명호(2008, 9)는 다음 5종의 명부를 대상으로 단일명부를 작성하여 명부상의 전체 납북자 112,957명 가운데 중복된 명단을 제외한 96,013명을 단일명부상의 납북자로 나타내었다. 그 작업방법은 소트(sort)를 이용하여 중복자는 하나의 명단만 남기고 모두 삭제하는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중복비율은 약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 납북자 수 96,013명은 통일백서와 많은 논문에서 인용되고 있다. 그것은 단일명부 작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추가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13〉 김명호의 납북자 단일명부 작업 내역

번호	명부	작성기관	대상지역	발행일	납북자 수(명)
1	서울특별시 피해자 명단	공보처 통계국	서울	'50.12.1	2,438
2	6·25사변 피납치인사명부	6·25사변 피납치인사가족회	서울인근	'51.9.1	2,316
3	6·25사변 피납치명부	대한민국 정부	전국	'52	82,959
4	6·25동란으로 인한 피납치자 명부	내무부 치안국	남한 출신	'54	17,940
5	우리측 안부탐지 조회서	대한적십자사	전국	'56	7,304
합 계					112,957

2) 단일명부의 작성 방향

본 연구에서 다루는 8종의 명부에서 중복자가 없다는 가정하의 납북자 수는 145,084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상당수가

중복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중복자를 추출하여 제거하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명부 작성기관과 작성시기가 다르고, 유가족들이 신고를 할 때, 납북자의 나이를 신고일 당시의 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납북자의 주소도 본적지, 임시 거주지, 주소지 등 다양하게 기재하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납북자의 직업도 다양하게 기재하거나 아예 공란으로 처리한 경우도 다수 나타났다.

〈표 14〉 납북자 수의 추정

번호	명부(권)	작성기관	대상지역	발행일	납북자수(명)
1	서울특별시 피해자 명단(1권)	공보처 통계국	서울	'50.12.1	2,438
2	6·25사변 피납치인사명부(1권)	6·25사변 피납치인사가족회	서울인근	'51.8.27	2,527
3	6·25사변 피납치인사명부(1권)	6·25사변 피납치인사가족회	서울인근	'51.9.1	2,316
4	6·25사변 피납치명부(4권)	대한민국 정부	전국	'52	82,959
5	6·25동란으로 인한 피납치자명부(2권)	내무부 치안국	남한출신	'54	17,940
6	남한출신실향사민명부(1권)	6·25사변 피납치인사가족회	남한출신	'54	17,900
7	실향사민신고서(27권)	납북자 유가족	전국	'56	7,304
8	실향사민명부(1권)	국방부	전국	'63	11,700
합 계					145,084

단일명부의 작성은 무엇보다 많은 작업자의 노력을 필요로 하며, 결코 단시간에 이를 수 없다. 그렇지만 논자가 구상하는 8종의 명부에 대한 새로운 단일명부 작성의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단일명부의 조사항목 결정 : 명부상의 조사항목이 각각 다르므로, 어디까지 나타낼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8종 명부에 대한 주소체계 정리 : 8종 명부의 주소를 시도 / 구군 / 읍면동 / 리번지로 셀(cell)을 구분하여 주소 정보를 재정리한다.
- ③ 주소체계 데이터의 수정 : 정리된 주소정보를 이용하여 주소 오류를 수정한다. 예를 들면, 강릉시나 강릉군과 같이 시·군명을 서로 혼용해서 사용한 경우에 동일하게 수정하고, 읍·면·동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리번지 주소를 이용하여 읍·면·동을 검색하여 입력한다.
- ④ 데이터 sorting : 성명순으로 데이터를 sorting한다.
- ⑤ 1차 비중복자 추출 : 8개 명부의 납복자 수 145,084명에서 비중복자를 성명, 나이, 주소(시·도, 구·군, 읍·면·동 등) 자료를 이용하여 추출한다. 추출한 비중복자는 별도의 단일명부 DB에 저장하고, 중복자는 1차 중복자 DB에 저장한다.
- ⑥ 2차 단순 중복자 추출 : ⑤의 1차 중복자 DB를 이용하며, <표 15>와 같이 단순 중복자 판정기준을 마련하여 DB상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예를 들면, 번호 2의 경우, 성명(한글, 한자), 직업, 주소가 같고, 단지 나이만 ± 4 이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다른 사람으로 판정한다. 그리고 제거된 중복자는 별도의 2차 중복자 DB에 저장하며, 어떤 명부에서 제거되었는지 기록을 남긴다.

〈표 15〉 단순 중복자 판정기준

번호	성명 (한글)	성명 (한자)	나이 ±4	직업	시(군), 구	나머지 주소	나머지 주소없음	판정
1	=	=	=	=	=	=	0	동일인
2	=	=	다름	=	=	=	0	다른 사람
3	=	=	=	=	=	다름	0	다른 사람
4	=	=	=	0	=	=	0	동일인
5	=	=	=	다름	=	=	0	동일인
6	=	=	=	다름	=	0	=	동일인
7	=	=	=	=	=	0	=	동일인
8	=	다름	=	=	=	=		동일인
9	=	다름	=	=	=	다름		다른 사람

- ⑦ 3차 중복자 제거 : 남아있는 1차 중복자 DB에서 성명, 연령, 직업, 주소 등을 파악하여 수작업으로 중복자를 가려내어 제거하고, 제거된 중복자는 2차 중복자 DB에 저장한다. 이때, 유가족들이 작성한 『실향사민신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면, 납북자의 주소란에 기재한 본적, 거주지, 주소지 간의 혼돈을 제거할 수 있고, 직업란에 기재한 직업과 사회활동 간의 혼돈도 제거할 수 있다.
- ⑧ 단일명부 작성 : ⑤의 비중복자 DB와 ⑤, ⑥, ⑦의 과정에서 1차 중복자 DB에 남은 명단을 합하여 단일명부를 작성한다.
- ⑨ 기초 통계 분석 : ⑧의 단일명부를 이용하여 자료의 기초통계를 분석한다.

V. 결론 및 시사점

전시납북자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6·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그동안 전시납북자 명부가 12종이 발견되었으며, 그 수도 약 10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일성(1946, 66-69)의 ‘남조선에서 인테리를 데려올데 대하여’라는 담화내용에서 6·25전시 납북자 문제는 ‘남조선에 있는 인테리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새 생활의 길을 열어주며, 그들의 희망에 따라 교육, 과학연구, 문화예술사업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 내용은 북한이 “북한에 납북자는 없고 자진 월북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명부의 기재 항목을 통해 그들이 강제로 끌려간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증명할 수 있도록 본 연구는, 그동안 발견된 12종의 명부들에 대하여, 각 명부의 작성 배경과 내용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 12일까지 전국의 시, 군, 구, 읍, 면, 동을 통하여 거국적으로 납북피해신고가 진행되었던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전후세대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6·25전쟁 납북자 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 해결방안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임기 기간에 시행된 햇볕정책은 북한달래기에 힘써왔기 때문에, 납북자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걸쳐 납북자 특별법의 제정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제는 납북자 가족의 생존권과 관련된 내부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기

이며,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납북자들을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윤여상은 납북자 문제를 과거청산의 개념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독일과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대대적인 청산작업을 통하여 민족 구성원들간의 화해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었다(윤여상 2004, 217)고 하였다. 그리고 납북된 민간인 송환 문제와 관련하여 전승만(2003, 2)은 북한이 제네바 협약 제42조의 ‘전시 민간인을 억류할 수 없도록 한 규정’, 휴전협정 제Ⅲ조 제59항의 ‘민간인도 고향으로 가기를 원하면 보내주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지난 65년간 민간인을 억류한 것은 국제인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그 해결 방안으로 우리 정부의 적극적 자세, 관련 국제기구의 활용, 관련 국가들과의 공동대처, 유가족과 사회단체 지원 등을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납북자 문제는 북한의 무대응으로 인하여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는 않지만, 이 문제는 개인의 인권문제인 동시에 인도주의적인 문제이다. 정부는 납북자 문제를 인도주의적인 접근방법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6·25전쟁 납북자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책임지게 하기 어렵다. 어려운 만큼 우리 정부는 통일을 예측하고, 납북자 문제 해결을 그 대안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북·일수교 협상에서 일본 정부가 납북 일본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납북자의 송환문제가 남아 있다. 우선적으로 납북자의 생사확인파 소제지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납북자의 상봉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미 북한에서 사망한 납북자들의 유해 송환 문제도 다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6·25사변 피납치인사가족회. 1951. 8. 『6·25사변 피납치인사 명부』.
_____. 1951. 9. 『6·25사변 피납치인사 명부』.
_____. 1954. 『남한출신 실향사민 명부』.
-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2002. 3. “6·25납북자 자료발굴.” 『뜻』, 2.
- 강찬호. 2013. “일본인 납치·북한 핵문제 놓고 23년간 쳇바퀴.” 『중앙일보』 (5월 20일).
- 공보처 통계국. 1950. 『서울특별시 피해자 명부』. 서울: 공보처.
_____. 1952. 『대한민국 통계연감』. 서울: 공보처.
_____. 1953. 『대한민국 통계연감』. 서울: 공보처.
- 국무조정실 통일안보정책과. 2016. 『보도자료』 2016년 4월 21일.
- 국방부. 1963. 『실향사민 명부』. 서울: 국방부.
- 김명호. 2004. “6·25전쟁 납북자 실태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사회과학연구』 4(1), 159-176.
_____. 2006. “6·25전쟁 납북자의 납북동기 분석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6(3), 113-138.
_____. 2008. “6·25전쟁중 납북자 실태의 실증적 분석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8(2), 1-24.
_____. 2015. “6·25전쟁 납북피해신고와 유가족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납북자 관련 특별법에 의한 납북피해신고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5(1), 75-101.
- 김성동. 2002. 2. “국가 작성 6·25 납북자 8만명 명부 발견.” 『월간조선』. 서울: 월간조선사.
- 김용범. 2002. 9. “일본 사례와 북한의 협상태도 분석에 따른 단계적 실천방안을 중심으로.” 『뜻』 4, 20-49.
- 김일성. 1946. “남조선에서 인테리들을 데려올데 대하여.” 『김일성전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66-69.
- 내무부 치안국, 1954. 『6·25동란으로 인한 피납치자 명부』. 서울: 내무부.

- 노병춘. 2002. 3. “6·25전쟁 납북인사 생사확인의 현실적 해결방안.” 『뜻』 2, 29-63.
- 대한민국 정부. 1952. 10.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 _____. 1953.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추가분』.
- 대한적십자사. 1956a. 『1956년 실향사민 등록자 명단』. 서울: 대한적십자사.
- _____. 1956b. 『우리측 안부탐지조회서』. 서울: 대한적십자사.
- _____. 1976. 『이산가족백서』. 서울: 대한적십자사.
- 북한(추정). 1951. 『INFORMATION REPORT』.
- 신 울. 2001. 11. “한국전쟁 당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 모색.” 『뜻』 1, 14-31.
- _____. 2003. 12. 19.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언”, 『납북자 관련 인권문제와 해결방안 공청회』 3-23.
- 윤여상. 2002. “납북자 실태와 해결방안.” 『통일문제연구』 14(1), 283-313.
- _____. 2004. “6·25전쟁 납북자 문제의 성격과 해결 방안.” 『한국정치학회보』 38(2), 217-236.
- 이혜복. 2002. 7. “휴전의 제물이 된 군 포로와 납북인사들.” 『북한』 367, 89.
- 전승만. 2003. 6. 10. “납북자 송환에 관한 법적 고찰.” 『제1회 통일포럼 발표』. NKNET, 2.
- 통일부. 2015. 『동서독교류협력사례집』. 서울: 통일부.
-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2006. “6·25전쟁 납북자 실태의 실증적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집 1권』. 793-804.
1950. “대한적십자사의 행방불명자 조사사업 착수에 관하여.” 『동아일보』 (11월 9일).
1952. “피랍인 명부 등록 요망.” (1월 5일). 『동아일보』
1953. “찾아달라! 남편을, 아들을 . . . 피눈물 어린 가족들의 호소.”

『조선일보』 (8월 14일).

1964. “납북인사 송환을 위한 서명운동 마침내 백만을 돌파.” 『조선일보』 (8월 25일).

2010. “정부차원 첫 6·25납북피해 진상규명 작업 시동.” 『해럴드경제』 (12월 14일).

Kwari report. 2007. Telegram Received Cite HNC-629 Sent AMEMBASSY PUSAN. December23. 1951(NR: HNC 629), SECURITY INFORMATION.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2)』.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http://www.kwafu.org> (검색일: 2015.5.10)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http://www.abductions625.go.kr> (검색일: 2015.7.15.)

북한민주화네트워크. 2007.4.16. “정부, 납북자 문제 언제까지 북한 눈치만 볼 것인가,” 『데일리NK』, <http://www.nknet.org> (검색일: 2015.8.20.)

연변 인민방송국 해외연락부. <http://www.moyiza.com/~risan>

(검색일: 2015.9.20.)

이광백. 2008.12.30. “국군포로·납북자 송환 방안을 지지한다”, 『데일리NK』, <http://www.nknet.org> (검색일: 2015.6.20.)

naver 어학사전 <http://dic.naver.com> (검색일: 2015.7.15.)

Abstract

A Study on Characteristic Analysis of the Lists of the People Kidnapped to North Korea

Myung Ho Kim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12 pieces of list of the kidnaped in the Korean War have been discovered lately with the effort from the government and the Kidnaped Family Association. These documents differ each in the dates of publication, the purposes, the research items. And the authors each are found to be different: some of them are written by the government, some by the private organizations, and some by the Red Cross.

Due to the difficulty in acquiring the primary materials, no study has been performed yet to find the relation between each of the documents, the writing background, and some detailed facts of the research items. The author, however, managed to obtain all the relevant material with the help of the Kidnaped Family Association.

The study has examined in detail the 12 pieces of document to analyze the contents, the writing background. And it has been proven, though indirectly, that the kidnaped were taken forcibly to North Korea against their will. A comprehensive analysis and found the whole list of these list are presented the direction of creating a single consolidated list.

In conclusion, as the problem of the kidnaped do not seem to make big progress with no answer from North Korea at the moment,

it should be kept in mind that the kidnaped should be considered a problem of both human right and humanism. The government should find a way to solve the problem from the humanistic perspective.

Key words: the kidnaped in the Korean War, the list of the kidnaped

투고일 : 2016년 04월 24일

심사일 : 2016년 05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6년 05월 12일